
 <b>교육부</b>		<h1>설명자료</h1> <p>2021. 10. 1.(금) 배포</p>			
보도일	<b>배포 즉시</b>				
담 당	교원정책과	담당자	과 장	윤소영	(☎ 044-203-6688)
			사무관	윤현아	(☎ 044-203-6940)
			연구사	이선미	(☎ 044-203-6486)

## 우리 부는 교원의 성비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- 언론사명 : 조선일보(9.30.), 서울경제(10.1.) 등
- 제목 : 텔레그램 성착취물 내려받은 교사 10명 중 ‘파면’ 은 1명 뿐 ‘n번방’ 연루 교사들이 아직도…10명 중 1명만 파면

### 〈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〉

- 지난 해 10월 이후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의혹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교원은 10명으로, 이 중 파면 1명, 당연퇴직 1명, 계약해지(기간제교사) 3명 등 총 5명을 교단에서 배제하였습니다.
  - 나머지 5명 가운데, 2명은 무혐의로 수사 종결되었고, 3명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.
- 우리 부는 성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비 교원의 양성 단계부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·개정해 왔으며,
  - 앞으로도 교육계의 성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.



## 참고

## 성비위 교원 근절을 위한 단계별 조치

단계	단계별 주요 사항
① 예비 교원 양성(교·사대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의무이수</li><li>• 자격 취득 결격사유 :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,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,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 받은 자</li></ul>
② 교원 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결격사유 :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,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,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 받은 자</li></ul>
③ 징계사유 발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직위해제 : 아동법 위반,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개시 된 자 직접적 직위해제 근거 마련</li><li>• 결격사유 해당되는 경우 → 당연퇴직</li><li>• 모든 성폭력,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→ <u>해임~파면</u> ※ (국가공무원)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·미성년자·장애인 대상 성폭력인 경우 → <u>정직~파면</u> / 그밖의 성폭력 → <u>견책~파면</u></li><li>• 미성년자·장애인에 대한 성희롱·공연음란 행위, (성인대상) 성매매 → <u>정직~파면</u> ※ (국가공무원) 모든 성희롱, 성매매 → <u>견책~파면</u></li></ul>
④ 징계 이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성폭력 등 성비위는 교장 임용 배제 4대 비위*에 포함 * 금품·향응수수, 상습폭행, 성폭행, 성적조작</li><li>• 징계수준에 따라 5년~10년 범위에서 담임 배제</li></ul>